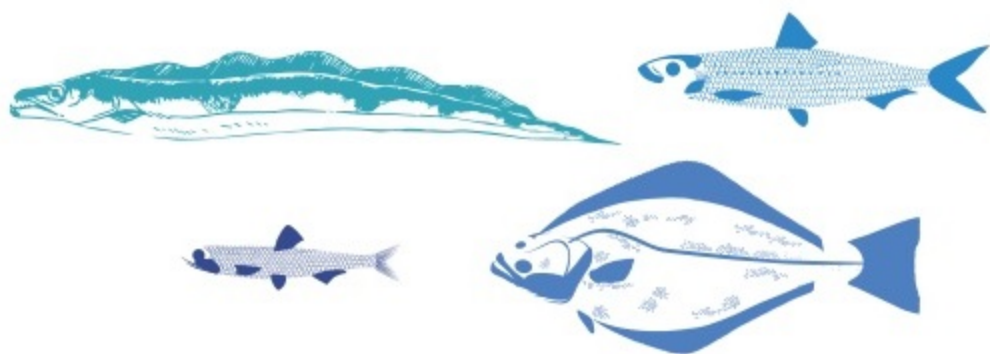


궁금海 설명海 이해海 함께海

금어기·금지체장 Q&A





궁금해요! 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

Q1. 금어기·금지체장이 뭔가요?

A.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 물고기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별표 2

Q2.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설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 과도한 어획 및 기후변화 등으로 자원고갈의 위험성이 있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별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체중)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Q3.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설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금지 기간(금어기)는 산란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어종별로 주 산란기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금지체장은 어린 고기 보호를 위해 성어와 어린 고기를 구분하는 기준인 성숙체장(개체군 집단 중 50%가 성숙된 개체의 평균체장)을 기준으로 조업현실을 고려하여 어업현장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Q4.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설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A.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은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안 마련 → 사전의견수렴(간담회 등) → 입안(재·개정 이유, 내용 등) → 입법예고(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 → 규제심사 및 사전검토 → 법제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및 시행



궁금해요! 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

Q5.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수산자원관리법에는 현재 44개 어종의 금어기와 42개 어종의 금지체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검색하신 뒤 금어기는 별표 1을, 금지체장(체중)은 별표 2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측(⇔) 금어기·금지체장 표 참고**

Q6. 금지체장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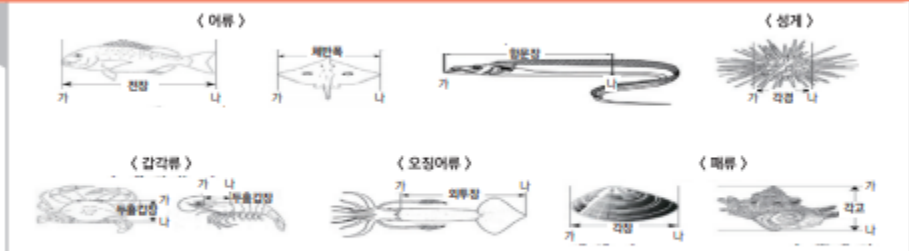
A. 포획금지체장 측정방법은 수산자원 분류군별로 다릅니다. 어류는 일반적으로 머리에서 꼬리까지 길이를 나타내는 전장을 기준으로 하며, 갈치와 같이 몸이 긴 어류는 머리에서 항문까지 길이를 나타내는 항문장, 홍어류는 체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갑각류는 두흉갑장을 기준으로 하며, 패류는 각장과 각고, 그리고 오징어류는 외투장의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Q7.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기간은 모든 해역과 어업에서 동일한가요?

A. 대부분의 어종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으나, 지역과 어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어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대게의 포획 금지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나,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살오징어의 포획금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나, 연안복합 및 근해채낚기 어업과 정치망어업은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측정 방법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기간(금어기)

● 포획·채취 금지 기간 [시행령 제6조, 별표 1] : 44종

2021. 1. 1. 기준

품 종	포획 금지 기간	품 종	포획 금지 기간
개서대	7.1~8.31	새조개	6.16~9.30(단,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6.1~9.30)
대구	1.16~2.15	소라	6.1~8.31(전남, 제주), 7.1~9.30(제주 추자면) 6.1~9.30(울릉)
문치가자미	12.1~익년 1.31	전복류	9.1~10.31(제주 10.1~12.31)
연어	10.1~11.30	코끼리조개	4.1~7.31(강원, 경북)
전어	5.1~7.15(단, 강원, 경북 제외)	키조개	7.1~8.31
쥐노래미	11.1~12.31	가리비	3.1~6.30
참홍어	6.1~7.15	개다시마	11.1~익년 1.31
참조기	7.1~7.31(단, 유자망 4.22~8.10)	감태	5.1~7.31(제주 연종)
꽃게	6.21~8.20(단, 연평 등 서해5도서 7.1~8.31)	곰피	5.1~7.31
대게	6.1~11.30	넙미역	9.1~11.30(제주) 단, 지자체 고시로 5.1~11.30 중 3개월 이상 지정 가능
붉은대게	7.10~8.25(단, 강원연안자망 6.1~7.10)	대항	5.1~7.31
털게	4.1~5.31(강원)	도박류	10.1~익년 4.30
달새우	7.1~8.31	뽕부기	8.1~9.30
대하	5.1~6.30	우뚱가사리	11.1~익년 4.30
펄달새우	6.1~8.31	뿔	10.1~익년 1.31
백합	7.1~8.20	해삼	7.1~7.31
갈치	7.1~7.31(근해채취기, 연안복합 제외)	살오징어	4.1~5.31(단, 근해채취기, 연안복합, 정치망 4.1~4.30)
고등어	4.1~6.30 중 1개월 * '21년 : 4.26~5.26 (소형선망·제주정치망 4.1~4.30)	말쥐치	5.1~7.31
육돔	7.21~8.20	낙지	6.1~6.30 (지자체 고시 별도)
오분자기	7.1~8.31	명태	1.1~12.31
주꾸미	5.11~8.31	삼치	5.1~5.31
감성돔	5.1~5.31	참문어	5.16~6.30 (지자체 고시 별도)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체장(체중)

● 포획·채취 금지체장(체중) 기준(시행령 제6조, 별표 2) : 42종

2021. 1. 1. 기준

품 종	포획 금지 체장	품 종	포획 금지 체장	품 종	포획 금지 체장
개서대	26cm	민어	33cm	대게	9cm
문치가자미	20cm(단, 3년간 17cm)	방어	30cm	털게	7cm(강원)
참가자미	20cm(단, 3년간 17cm)	불락	15cm	달새우	5cm
감성돔	25cm	붕장어	35cm	펄달새우	10cm
돌돔	24cm	조피불락	23cm	백합	5cm
참돔	24cm	쥐노래미	20cm	소라	5cm(제주 7cm)
황돔	15cm	황복	20cm	오분자기 마대오분자기	4cm(제주)
넙치	35cm	참홍어	42cm	전복류	7cm(제주 10cm)
농어	30cm	꽃게	6.4cm	기수채취	1.5cm
대구	35cm	갈치	18cm(항문장)	대문어	600g (중량)
도루묵	11cm	말쥐치	18cm	고등어	21cm
참조기	15cm	키조개	18cm(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갯장어	40cm
살오징어	15cm(외투장)	미거지	40cm	기름가자미	20cm(단, 3년간 17cm)
용가자미	20cm(단, 3년간 17cm)	청어	20cm		

*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용가자미, 기름가자미의 경우 '21.1.1~'23.12.31까지는 17cm 이하 적용, '24.1.1부터는 20cm 이하 적용

● 암컷 포획 금지 : 4종(수산자원관리법 제6조 제3항)

품 종	포획 금지 기준	품 종	포획 금지 기준
꽃게	복부 외포란 암컷	대게	암컷
민꽃게		붉은대게	



궁금해요! 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

Q8.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은 누가 지켜야 하나요? 비어업인에게도 적용되나요?

A. 맞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이용하거나 하려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어업인과 낚시인은 물론 비어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비어업인은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를 포함하며 최근 스킨스쿠버 등의 레저활동 또는 맨손으로 수산자원을 잡는 일반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비어업인이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체중)을 위반하면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9.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거법: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70조, 낚시관리및육성법 제55조

Q10. 금어기·금지체장에 해당하는 개체를 포획·채취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잡기만 해도 단속되나요?

A. 조업이나 낚시, 해양레포츠 중 부득이하게 포획·채취 금지 기준을 위반한 수산자원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종을 확인한 즉시 포획·채취한 장소에서 방류하여야 하며, 포획·채취 금지 기준 해당 개체임을 인지하고서도 선별하여 보관하거나, 관찰을 위해 소지하게 될 시 단속 될 수 있습니다.

Q11. '총알오징어', '총알문어', '솔치' 등의 별칭으로 유통되는 물고기들은 모두 불법인가요?

A. 대부분의 별칭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 개체를 별미로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별칭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는 금지체장 이하의 개체가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별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별칭으로 유통되는 수산물 중 금지체장 이하의 개체는 불법 어획물에 해당합니다. 어린 물고기를 별칭으로 유통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어린 물고기가 아닌 다른 품종으로 오인할 수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별칭 사용 자제 등 어린 물고기 보호 캠페인(치어업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탁海 같이海

금어기·금지체장 준수 수산자원 보호의 첫걸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금어기·금지체장 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검색하세요! 불법어획 신고 : 1588-5119